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골드플랜연금보험

2. 보험의 구성

보험의 세목	연금 지급형태		
적립형	종신 연금형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부부계약)	정액형(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
			체증형(10년보증, 20년보증)
			소득보장형(10년보증, 20년보증)
		보증금액부	
거치형	종신 연금형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부부계약)	정액형(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
			체증형(10년보증, 20년보증)
			소득보장형(10년보증, 20년보증)
		보증금액부	
	확정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형		
즉시형	종신 연금형 (개인계약, 부부계약)	정액형(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	
		체증형(10년보증, 20년보증)	
		소득보장형(10년보증, 20년보증)	
	확정연금형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형		

3.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납입주기

구분	기본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Y)	납입 주기
적립형	10만원 이상	5년	만15세 ~ (Y-15)세	45세 ~ 75세	월납
		7년	만15세 ~ (Y-13)세		
		10년	만15세 ~ (Y-14)세		
		11년~전기납 (Y세납)	만15세 ~ (Y-14)세		
	20만원 이상	5년	만15세 ~ (Y-10)세		
		7년	만15세 ~ (Y-11)세		
		10년	만15세 ~ (Y-12)세		
		11년~전기납 (Y세납)	만15세 ~ (Y-12)세		
거치형	1,000만원 이상	일시납	만15세 ~ (Y-6)세	45세 ~ 80세	일시납
즉시형			45세 ~ 75세		

(주)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남자인 부부계약의 최저 연금개시나이는 48세임

4. 보험기간

구분	적립형, 거치형	즉시형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장개시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까지
	상속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5.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6.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1) 적립형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는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거치형

계약자가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하며,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3) 즉시형

계약자가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하며, 일시납보험료는 1,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으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적립형

(가)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납입기간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로 하며,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매회 5만원 이상)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 가입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 ‘(나)’ 에서 가입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고, 이후 계약일 기준으로 매1년 경과시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한다.

(라) ‘(나)’ 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월평균 이율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 5년 초과 15년 이하인 경우에는 2.0%, 15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

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의 한도를 적용한다.

(2) 거치형

(가)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외에 보험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0%이내이며, 연간(보험년도 기준)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 이내에서 시중 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 ‘(나)’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월평균 이율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 5년 초과 15년 이하인 경우에는 2.0%, 15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의 한도를 적용한다.

7.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이라 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일시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함)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에도 동일하게 납입일시중지가 적용된다. 다만, 납입일시중지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나. ‘가’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된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다.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연금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최초로 돌아오는 연 계약해당일로 연금개시나이가

연기된다. 다만, 특약의 보험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하며, 특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특약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되는 특약보험료는 주계약 연금 계약 계약자적립금에 투입(수금비 제외)되어 적립된다. 또한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연금개시나이가 75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다.

라.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주계약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말함. 이하 동일]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수금비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시에 공제한다.

마.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이내로 하고, 신청 1회당 12개월(신청시점에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최고한도로 하며, 납입일시중지 신청 횟수는 3회를 최고한도로 한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기일까지 해당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사.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납입일시중지신청으로 인한 월대체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더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후 최초로 다가오는 월

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8. 계약자적립금의 중도 인출에 관한 사항

- 가. 적립형과 거치형에 한하여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 나.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한다.
- 다. ‘나’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 마.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는 것으로 한다.

9. 공시이율 계산에 관한 사항

-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 간 확정 적용한다.

다.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 ~ 120%범위 내에서 정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1)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 (주) ■ I : 직전 12개월간 투자수익
- E : 직전 12개월간 투자비용
- A₁₂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₀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2)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산출식} = B1 \times r + B2 \times (1 - r)$$

- (주) ■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 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 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가중이동평균이율 (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_i(-3) :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2) :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1)$: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 라. ‘가’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가’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해당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 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 5년 초과 1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하고, 15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로 한다.
-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른다.

10. 기타

가. 고액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적립형에 한함)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50만원 초과인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할인한다.

할인조건	할인금액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금액의 2.0%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금액의 2.5% + 10,000원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금액의 3.0% + 35,000원

나. 장기납입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적립형에 한함)

1) 적립형의 장기납입보험료에 한하여 주계약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실제 납입한 납입회차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할인한다.

납입회차	할인율
61회차 이상 120회차 이내	기본보험료의 0.5%
121회차 이상	기본보험료의 0.7%

- 2) '가'에 의하여 고액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도 장기 납입보험료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다.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 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라. 선납보험료

- (1)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2)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하며, 당해보험료는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마. 보험계약대출이율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바. 이 보험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적립형 : 기본보험료 × 12 × MIN [납입기간, 10]
- (2) 거치형, 즉시형 : 일시납보험료

다만, 즉시형의 보장계약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일시납 보험료의 15%로 한다.

사. 연금지급형태의 복수선택

- (1) 거치형에 한하여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복수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 (2) 제(1)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복수로 선택하는 경우의 보험기간은 복수로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중 가장 긴 보험기간으로 한다.
- (3) 제(1)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복수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선택하여야 하며,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은 연금개시시 계약자적립금의 일정비율(10% 단위)로 선택하여야 한다.

아.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자.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차.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의 최저 보증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 1)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한도로 한다.
- 2) '1)'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 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한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 또는 기본보험료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 3) '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인출(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해당 인출(감액)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2)'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